

#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제한경쟁,적격심사,전자입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1. 사업개요

1) 공사명 : 킨텍스아이파크아파트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

2) 사업내용

① 단 지 명 : 킨텍스아이파크아파트

②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55번길 45

③ 단지규모 : 10 개동 811세대, 20층, 관리면적 100,601 m<sup>2</sup>.

④ 공사범위 : 승강기 총 24대 교체

※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 시방서 참조

## 2. 현장설명회,마감,개찰 등

| 해 당 일 정 | 일시                   | 장소       | 비고                      |
|---------|----------------------|----------|-------------------------|
| 입찰공고    | 2026. 10. 02.        |          |                         |
| 현장설명회   | 2026. 10. 08. ( 14시) | 관리사무소    |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만 입찰참가 가능     |
| 서류마감    | 2026. 10. 15. ( 17시) | 전자입찰시스템  |                         |
| 개찰      | 2026. 10. 15. ( 18시) | 개찰집행자 PC |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시 참여자에 유선 통보 |
| 사업설명회   | 20 . . . ( 시)        | 입주자대표회의실 | 없음                      |

## 3. 입찰종류,낙찰방법,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 4. 참가자격

1)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다.

2)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업체

■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제조 및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업체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3) 자본금 30억 원 이상인 업체

4) 사업실적 :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 또는 설치공사 실적이 3,000대 이상인 업체.

(※ 주의: 실적은 최근 5년간(2021.1.1~ 입찰공고일) 완료된 실적만 인정한다. 단, 계약체결 후 착수 전 또는 계약기간이 입찰공고일을 경과하여 진행 중인 실적은 불인정.)

5) 위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 5. 제출서류

### 1) 제출서류(전체 사본)

- ① 산출내역서와 선정지침 제31조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증권, 공제증권 또는 현금납부 영수증 (계좌이체증명서) 택1, 각 1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전자입찰시 입찰서양식 불필요)
- ②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증, 승강기 제조업 등록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전기공사업 등록증 각 1부,
- ③ 사업자등록증 1부,
- ④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1부,
- ⑥ 지침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관련 과징금처분 범위반사실확인서 또는 현황 화면 출력물 링크주소 (<https://case.ftc.go.kr/ocp/co/violatLawK.do>) 택1,
- ⑦ 4. 참가자격 중 아래 서류 1부,
  - 4) 입찰참가자격 중 사업실적에 관한 실적현황 및 각 현장별 사업실적증명서 각1부,
- ⑧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 ⑨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아래 제출서류 각1부,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 행정처분확인서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br>예) 공고일 2026.10.08 → 확인 기간 2025.10.08 ~ 2026.10.07 포함 시 유효 |
| 기술인력보유증명서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
| 장비보유 증명서  | 제출서류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업무실적 증명서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                                                               |
| 사업제안서     |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지원서비스 능력 포함                                                                                                 |

☆위 서류 중 행정처분확인서 이외 미제출시 0점처리 하되, 행정처분확인서 무효(미제출시 선정지침 별표 3의 제3호 적용, 제출은 했지만 확인 기간 부족 시 선정지침 별표3의 제7호 적용)

2) 제출방법 :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위 제출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

## 6. 무효입찰자 무효통보 서면,팩스,유선,시스템등록 중 어느하나

## 7. 입찰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 1)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변경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공고문 1.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작성 할 것.

## 8. 계약체결

- 1) 계약기간 : 착공일부터 **6 개월** 간
- 2)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 3)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 (1) 선정지침 제32조에 따른 공사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계약 금액의 **10%**로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
  - (2)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처에게 납부(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포함) 하여야 한다.
- 4)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사용 장비의 **제조사 공급확인서 또는 정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 9.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

-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 2) 입찰보증증권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28-82-81189 )입니다. 현금입금 업체는 전화 문의.
- 3)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 10. 그 밖에 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17-3036) 문의 바랍니다.

## 11. 첨부 : 적격심사평가표, 서약서 각 1부.

킨텍스아이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별지 제12호 서식] (킨텍스아이파크아파트 관리규약 제85조의2제3항 관련)

## 공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세부평가표

평가위원 : ○○○ (서명)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     |     |     | 비고 |
|-------------------------|-------------------|------|----------------------------|----------|-----|-----|-----|-----|----|
|                         |                   |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 기업<br>신뢰도<br>(30점)      | 신용평가등급<br>(15점)   | 15   | 비고 배점표                     |          |     |     |     |     |    |
|                         |                   | 14.5 | 비고 배점표                     |          |     |     |     |     |    |
|                         |                   | 14   | 비고 배점표                     |          |     |     |     |     |    |
|                         |                   | 11   | 비고 배점표                     |          |     |     |     |     |    |
|                         | 행정처분 건수<br>(15점)  | 15   | 없음                         |          |     |     |     |     |    |
|                         |                   | 10   | 1건                         |          |     |     |     |     |    |
|                         |                   | 5    | 2~3건                       |          |     |     |     |     |    |
|                         |                   | 1    | 4건 이상                      |          |     |     |     |     |    |
| 업무<br>수행<br>능력<br>(30점) | 기술자 등 보유<br>(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 업무실적<br>(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
|                         |                   | 8    | 8~9건                       |          |     |     |     |     |    |
|                         |                   | 6    | 6~7건                       |          |     |     |     |     |    |
|                         |                   | 4    | 4~5건                       |          |     |     |     |     |    |
|                         |                   | 2    | 3건 이하                      |          |     |     |     |     |    |
|                         | 장비 보유<br>(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사업<br>제안서<br>(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br>(5점) | 5    | 1순위(최우수1개)                 |          |     |     |     |     |    |
|                         |                   | 4    | 2순위(20%)                   |          |     |     |     |     |    |
|                         |                   | 3    | 3순위(40%)                   |          |     |     |     |     |    |
|                         |                   | 2    | 4순위(20%)                   |          |     |     |     |     |    |
|                         |                   | 1    | 5순위(20%)                   |          |     |     |     |     |    |
|                         | 지원서비스 능력<br>(5점)  | 5    | 1순위(최우수1개)                 |          |     |     |     |     |    |
|                         |                   | 4    | 2순위(20%)                   |          |     |     |     |     |    |
|                         |                   | 3    | 3순위(40%)                   |          |     |     |     |     |    |
|                         |                   | 2    | 4순위(20%)                   |          |     |     |     |     |    |
|                         |                   | 1    | 5순위(20%)                   |          |     |     |     |     |    |
| 입찰<br>가격<br>(30점)       | 입찰가격<br>(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8에 따라 산출된<br>점수로 순위별 배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

<비고1>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공사 사업자 선정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둘째 자리 이하 버림. 다만, 산출 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배점 점수 =  $30 - (30 \times (\text{가중치}) \times \frac{\text{입찰가} - \text{최저가}}{\text{최고가}})$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점수 =  $\{30 - (30 \times (\text{가중치}) \times \frac{\text{최고가} - \text{입찰가}}{\text{최고가}})\}$ , (가중치는 1로 정한다.)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적격심사평가표 설명 및 제시사항

### <비고2>

1.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미제출 시 입찰무효)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2. 행정처분을 제외한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한다.
3.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자 보유 및 장비 보유, 업무실적의 제시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구 분            | 제 시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신용평가등급       | <p>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 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p> <table><tr><th>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th><th>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th><th>③ 기업신용평가등급</th><th>배점</th></tr><tr><td>AAA ~ BB+, BB°</td><td>A1~B+</td><td>①의 AAA~BB+, BB° 에 준하는 등급</td><td>15.0</td></tr><tr><td>BB-</td><td>B°</td><td>①의 BB-에 준하는 등급</td><td>14.5</td></tr><tr><td>B+, B°, B-</td><td>B-</td><td>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td><td>14.0</td></tr><tr><td>CCC+ 이하</td><td>C 이하</td><td>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td><td>11.0</td></tr></table>                                                                                                                                                                   |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AAA ~ BB+, BB° | A1~B+  | ①의 AAA~BB+, BB° 에 준하는 등급 | 15.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        |                          |      |     |    |                |      |            |    |                       |      |         |      |                    |      |
| AAA ~ BB+, BB° | A1~B+                                                                                                                                                                                                                                                                                                                                                                                                                                                                                                                                                                                                                                                                                                       | ①의 AAA~BB+, BB° 에 준하는 등급 | 15.0          |            |        |                |        |                          |      |     |    |                |      |            |    |                       |      |         |      |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                |        |                          |      |     |    |                |      |            |    |                       |      |         |      |                    |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                |        |                          |      |     |    |                |      |            |    |                       |      |         |      |                    |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        |                |        |                          |      |     |    |                |      |            |    |                       |      |         |      |                    |      |
| 기술자보유          | <p>① 기술자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즉 승강기 제조업, 설치업, 승강기 유지관리업,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만족한 업체는 만점으로 한다.</p> <p>②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 공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서,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 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p> <table><tr><td>국가기술자격자</td><td>기능사</td><td>산업기사</td><td>기사</td><td>기능장</td><td>기술·건축사</td></tr><tr><td>학·경력 기술자</td><td></td><td>초급</td><td>중급</td><td>고급</td><td>특급</td></tr><tr><td>산정기준</td><td>1인</td><td>1.25인</td><td>1.5인</td><td>1.75인</td><td>2인</td></tr></table> <p>③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고용·국민건강·국민연금·산재보험) 가운데 하나 이상의 가입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p>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건축사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      |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건축사 |                |        |                          |      |     |    |                |      |            |    |                       |      |         |      |                    |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                          |      |     |    |                |      |            |    |                       |      |         |      |                    |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        |                          |      |     |    |                |      |            |    |                       |      |         |      |                    |      |
| 장비보유           | <p>① 장비보유 인정대상은 다음 나열된 장비들을 기준으로 한다.</p> <p>틈새게이지, 속도계,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 소음계, 진동계, 버니어캘리퍼스, 조도계, 푸쉬풀게이지, 토크렌치, 표면온도측정기,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p> <p>② 장비보유 대수는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하며, 동종유형은 1종으로 산정한다.</p> <p>③ 장비보유는 승강기 제조업, 설치업, 승강기 유지관리업, 전기공사업 등록 기준을 만족한 업체는 만점으로 한다.</p>                                                                                                                                                                                                                                                                                                                                                                                          |                          |               |            |        |                |        |                          |      |     |    |                |      |            |    |                       |      |         |      |                    |      |
| 업무실적           | <p>① 업무실적은 5개 단지(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500세대 이상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p> <p>②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                          |               |            |        |                |        |                          |      |     |    |                |      |            |    |                       |      |         |      |                    |      |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5.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서 약 서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대표이사 성 명 :

위 본인은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 및 입찰 결과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였음을 인정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과정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발주처 (킨텍스아이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여 입찰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이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입찰에 임할 것을 동의하며, 본 입찰공고에 대한 해석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2. 입찰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입찰 자격의 상실 또는 계약 후에라도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음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공고 후 입찰과 관련하여 업체 간 비방 혹은 허위사실 유포, 담합행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입주민에게 금품, 향응, 접촉, 면담, 전화 연락 등으로 공정한 경쟁 입찰 업무를 방해한 업체는 실격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 과정 및 결과와 관련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어떠한 행정 및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본인(입찰자) 대표이사 : (인)

**킨텍스아이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